○ 의안제출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1. 11. 13. 양운섭의원외7인발의)

- 발 의 자 : 양운섭의원
- 찬 성 자 : 이영규의원, 안주영의원, 홍상기의원, 윤태봉의원, 김형기의원, 이중식의원, 최준화의원
-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조례 및 예산안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의와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행정의 책임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확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을 판단하는 의회자체 활동중의 하나이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및 동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자치단체통제 기능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부칙 제2항 (감사 또는 조사의 사무에 대한 경과 조치)을 두어 영등포구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축소시킴으로써 감사의 효율성 저하 및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부칙 제2항 "(감사 또는 조사의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감사 또는 조사의 사무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이 조례 시행년도인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로 개정.

- 개정조례안(6면에 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② (감사 또는 조사의 사무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를 (감사 또는 조사의 사무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이 조례 시행년도인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청원심사보고서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

(보고자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식)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91. 10. 24.
- 제안자 성명 : 윤 태 봉 의원
- 회부일자 : '91. 10. 24.
- 개회 회수 및 일수 : 7회 12일 ('91. 10. 24~'91. 11. 25)
- 관계공무원 출석 현황 :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외4명
- 건축안전 진단기관 진단책임자 : 대한건축사협회 편 기 봉
- 청원인 대표 : 재건축 추진위원회 총무 박 병 옥 외 3명

2. 제안설명 요지

영등포구 양평동 2가 40－1 소재 포푸라연립주택 204세대는 상습침수지역에다 불량시공으로 준공당시 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침수로 인한 지반이 약해져 있고 최근 서부간선도로 개통으로 소음진동이 극심하여 도괴 위험 및 누수, 침수, 감전사고 우려 등 거소의 장소 심히 부적합하여 재건축을 청원하게 됨.

3. 심사보고 요지
- '87년도 이전까지 상습침수지역으로 2차례에 걸쳐 1층까지 침수되었으며 지반이 매립지역으로 지반침하가 계속되어 도괴 위험 상존.
- 인접 서부간선도로의 극심한 차량소음으로 인한 진동으로 골조 및 방수층의 심한 크랙(crack)이 발생하여 도괴 위험.
- 건물 노후 및 불량상태가 전면 보수비용보다 재 건축비용이 저렴함.
- 건물현황이 연탄까스, 전기감전, 화재위험, 벽돌칸막이 붕괴 위험 등 안전 사고발생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가 요망됨.
- '90년도 수해, '87년도 이전까지 상습침수지역으로 향후 침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
- '90. 6. 15. 대한건축사협회의 건물안전진단 감정결과인 개축 또는 재건축이 요망된다는 결론은 타당성이 있음.
- 청원인에게 위 사항들을 더 뒷받침할 자료로 지반상태조사, 중성화시험, 간선도로변의 진동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구청 및 의회에 통보토록 조치하였음.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 21호에 해당되어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 1호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5. 소수의견요지 : 없음.

6. 의결방법 : 만장일치

7. 첨부자료

1) 포푸라 연립주택 각동별 문제사항
2) 포푸라 연립주택 현장 상황사진
3) 영등포구청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90 침수지역 현황보고 사본
(첨부자료는 게재하지 않음.)